



법조인 동정

양창수 前 대법관 민법 개정위원장 맡는다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民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민법 전면 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양창수 前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재형 前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학계와 실무자 등 전문가 22명이 함께 민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몇차례 소폭의 개정만 있었을 뿐 전체 틀은 유지돼 왔다. 법

무부가 1999년과 2009년 전면 개정을 두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성년 연령 기준과 성년후 견제 등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내용이 담겼지만, 결국 민법에 포함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도 민법이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낡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법개정위는 앞선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과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민법 전 분야에 걸쳐 손을 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을 우선 개정하고, 순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디지털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적용할 기본적인 법규를 마련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가 합리적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의무와 계약 기간 동안 업데이트할 의무를 부여하고 2년간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상 계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